

**의안번호** 제137호

#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			
제출연월일	2019. 10. 14.			

#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제137호

제출연월일 : 2019. 10. 14. 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## 1. 제안이유

○ 최근 각종 중대질환 및 암이 증가하면서 직원 건강을 위해 도 및 타·시군에서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 및 가정분위기조성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○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·심리 상담 지원 (안 제4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2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. 예고기간 : 2019. 9. 10. ~ 9. 30. (20일간)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인사과

□ 개정조례안논산시 조례 제 호

#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 제4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3.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·심리 상담 지원
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	관 부	서			성	명
입	행	정 지	원 고	나 장	०]	영	태
· 안	서	무	팀	장	김	일	규
자	담	Ę	}	자	o] (04	상 1-746-	수 5224)

# □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후생복지사업) 시장은 예산의	제4조(후생복지사업)(현행과 같음)
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	
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	
수 있다.	
1.~12.(생략)	1.~12.(생략)
13. 그 밖에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	13.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
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후생복지와	및 정신·심리 상담 지원
관련된 사항	<u>14.</u> (현행제13호와 같음)

# 붙임

## 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  - 지방공무원법 제77조(능률증진을 위한 사항)

## 2. 비용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○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몸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나. 추계결과

○ 2020년 ~ 2024년 (5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기초	합 계
건강검진비	건강검진비 1,446명 X 1/2 X 300,000원 X 5년 = 1,084,500	

※ 대상자(1,446): 공무원(1067), 시의원(12), 공중보건의(28), 청원경찰(27), 공무직(312)

# 행정지원과장 이 영 태

## 참고

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# 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「지방공무원법」

제77조(능률증진을 위한 사항)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